

1993. 12. 13.
제97회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도
수정예산 (안) 제안설명

충 청 북 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오늘 1993년도 제97회 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 도정의 이모 저모에 대하여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정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제4차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지난 12월 7일 정부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시달되어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43억원으로

- 일반회계 3,829억원
- 특별회계 1,214억원 입니다.

이는 본예산(안) 5,030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모두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 수정된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입재원은

- 먼저, 증액된 재원으로

-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강원도 부담금과 기금수입 등 세외수입 14억원
- 국고보조금 7억원
- 지방양여금 일반재원 63억원 입니다.

- 감액된 재원으로

- 지방양여금 지정분 60억원

- 지방교부세 일반분 7억원
 지정분 4억원 입니다.

－ 경정재원으로는

- 국고보조금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부담재원으로 유보하였던 8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경비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 필수경비로

- － 일반운영비등경상경비 4억원
- － 징수교부금 15억원을 증액하고
- － 지방채상환금 4억원을 감액하는한편
- － 예비비(유보재원)에서 88억원을 감액하여

경정 재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 둘째, 비도가 정하여진 특정재원관련 사업비로
 - 남한강대교 가설공사 강원도부담금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셋째,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라
 -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저소득모자가정 수업료및 입학금 지원, 경노식당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등 국고보조및 기금사업에 22억원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레포츠공원 조성, 철도 건널목개량 등 지방교부세 사업에 5억원을 각각 증액 하고
 - 지방도 정비, 하수종말처리장, 오지 개발, 정주권개발 등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57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 넷째, 중점투자 시책 사업비로

< 사회복지 분야 > 에서는

-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간이급수 시설, 상이
군경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지원 등 4개 사업
에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농수산 분야 > 에서는

-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새소득작목 개발,
농업연구기능 보강, 과수원에 기자재공급 등
5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 분야 > 에서는

- 위험도로 개량, 소방도로 개설, 취락지 도로
정비등 6개 사업에 5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
다.

< 치산·치수 분야 > 에서는

- 도유림관리와 재해 위험지역 정비 등 3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지역개발 분야 > 에서는

- 공예품 개발, 댐주변 주민숙원사업비, 하수도 정비, 관광지주변 정비, 충북 자원조사용역 등 7개 사업에 2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문화·체육 분야 > 에서는

- 문의 민속문화재단지 조성, 청풍 문화재단지 정비 등 3개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행정 분야 > 에서는

- 국·공유림 교환사업, VTR실 장비현대화,

출향인사 도정참여활동 지원,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 추진 등 4개 사업에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번 본예산(안) 제안 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개혁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와 한정된 재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본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